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 개정대비표

(구매기업용-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및 확정채권 양도방식용)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 (구매기업용-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및 확정채권 양도방식용)</p> <p>제 1 조 (목적) ~ 제 3 조 (업무의 방법) (기재생략)</p> <p>제 4 조 (기본 협약사항)</p> <p>① (기재생략)</p> <p>②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통보)</p> <p>1. (기재생략)</p> <p>2.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p> <p>③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p> <p>1.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채권명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 협력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외상매출채권양수도 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기업에게 채권양도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기업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 (구매기업용-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및 확정채권 양도방식용)</p> <p>제 1 조 (목적) ~ 제 3 조 (업무의 방법) (현행과 같음)</p> <p>제 4 조 (기본 협약사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통보)</p> <p>1. (현행과 같음)</p> <p>2.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p> <p>③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p> <p>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채권명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 협력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외상매출채권양수도 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기업에게 채권양도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기업은 아래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p> <p>1.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p> <p>3.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통보를 할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p> <p>4.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p> <p>5. 전산조작오류 등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p>	<p>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단축에 따른 문구 수정 호 번호 삭제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수정 (예외 사항 추가)</p>

<p>2.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p> <p>④~⑤ (기재생략)</p> <p>⑥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p> <p>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이의 없는 승낙을 한 이후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p> <p>1.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p> <p>3.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통보를 할 때까지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p> <p>4. 전산조작오류 등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p> <p>5. 기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⑦~⑩ (기재생략)</p> <p>제 5 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p> <p>(기재생략)</p>	<p>경우</p> <p>6. 기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삭제></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p> <p>구매기업이 제2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4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p> <p>⑦~⑩ (현행과 같음)</p> <p>제 5 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p> <p>(현행과 같음)</p>	<p>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삭제</p> <p>외담대 타 업무 협약서 문구 준용</p>
--	--	--

2. 개정 시행일: 2019년 7월 4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적용